

기업 설립에서 운영까지 법적형태 중요

인터넷 기업 설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붐을 이루는 만큼 창업 절차를 모르는 것도 사실. 특히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창업에 필수적인 회계 실무에 가장 취약하다. 기업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회계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

- 송치남 회계사/Whois 인터넷비즈니스 경영연구센터 (청송회계사무소 대표)



연재순서

- 1 인터넷 도메인 전략
- 2 인터넷 사업 전략
- 3 인터넷 법률 전략
- 4 인터넷 회계 전략 - 이번호
- 5 인터넷 자금 전략

인터넷 기업의 설립

기업의 법적 형태

기업을 최초로 설립하여 개시하려면 미리 고려하여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법적 형태이다. 기업의 법적 형태는 사업체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법적 문제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무문제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기업의 형태는 크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업경영자와 소유주가 분리될 수 있는 형태가 법인기업이라면,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개인기업일 것이다. 개인기업은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언제든지 설립이 가능한 반면, 법인은 상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설립한 후 상업등기소에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의 설립

개인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

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며,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기업이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허가사업일 경우 : 사업허가증사본 1부
- ④ 2인 이상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동업사실을 증명하는 동업계약서 사본 1부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신청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업자 유형은 업태와 종목 및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므로 신설기업의 추정매출액, 거래처, 세금부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유형을 선택한다. 대부분 인터넷 개인기업의 형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나, 매출거래가 주로 일반소비자로서 추정매출액이 연간 4천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업의 내용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실제로 많은 창업 준비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게 되면 세금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늦추거나 아예 무등록자로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즉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매출액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없다. 현행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간 10만원 이하의 세금부담 비율이 아주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금이 무서워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안하게 사업을 하느니 떳떳하게 사업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항상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 지급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사업초기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향후 이익 발생시

에 공제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익이 났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잔액을 사업자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상 채무에 대해서도 사업자 개인의 채무와 동일시되어 사업을 그만 두어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여러명의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전체가 연대의무를 갖는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은 상품 거래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구분된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만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갖는다.

기업형태로 개인기업을 선택할 경우,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회사자금의 입출에 제한이 없다.

또한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득세부담도 낮기 때문에 사업초기 회사의 매출액이 낮은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하여 세금면에서는 유리하여 많은 사업자가 개인기업의 형태로 설립된다. 하지만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기업의 설립

법인기업은 소유자인 주주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구분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설립은 유한책임으로 책임의 부담이 작고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큰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주식회사 설립시 고려할 사항〉

① 주주의 확보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가 최소한 4인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가까운 친인척으로 주주를 구성하게 되는데, 실제 회사의 지분을 갖지 않는 명의상의 주주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경영진의 선임

주식회사의 경영진으로 대표이사 1인, 이사 2인과 감사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로서 경영진에 참여하여도 무방하나 경영진은 회사업무상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상호의 선정

법인의 상호는 그 법인의 법적 형태를 나타내므로 상호에 반드시 주식회사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 시군 내에서는 타 법인이 먼저 등기한 상호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다른 법인의 등록상호를 열람하여 등기된 상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자본금의 납입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5천만원(벤처기업은 2천만원) 이상이므로 이 금액 이상이 납입된 통장으로 주금납입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설립등기가 완료된다. 등기 후에는 자유로이 자본금을 인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지출처가 불확실한 인출금에 대해서는 회사자금횡령으로 처벌 받거나 세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세(자본금의 1.2%), 교육세(등록세의 20%) 등 세금과 주권발행과 주주명부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 신고 >

법인설립 후 30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③ 법인정관사본 1부
- ④ 주주명부 1부
- ⑤ 개시대차대조표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동

일하지만 영세개인사업자가 누리는 간이과세자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매출액이 커질수록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대사업자들은 대개 법인사업자를 선호하게 된다.

재무회계 실무

회계원리 및 회계처리 실무

< 회계란 무엇인가? >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활동은 회계에 의해서 정리되어 이용자에게 전달되므로 기업의 언어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계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전 과정을 통털어 말하지만, 기록수단으로서서는 부기(장부기입)를 이용한다.

< 회계의 분류 >

회계는 회계보고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정보이용자(주주, 채권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 같은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리회계

경영자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즉시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세무회계

세법에서 규정된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에 납세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이다.

< 회계의 기본용어 >

① 복식부기

회계의 기록수단으로서의 복식부기는 기업의 거리를 차변(Debit)과 대변(Credit)으로 구분하여 양쪽으로 기재함으로써 다양한 거래의 기록과 집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② 전표

기업의 거래사실을 하나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기록한 표로서, 내부 결제절차를 통하여 거래의 승인 및 기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된다.

③ 계정과목

전표에 기록하기 위한 거래의 분류를 계정과목이라고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표준계정과목을 사용하지만 특수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④ 회계연도와 회계단위

- 회계연도

기업의 활동은 설립한 후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계산하여 마감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라고 한다.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회계단위

기업에서 회계를 적용할 때의 단위가 보통 하나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본점과 지점, 공장, 해외사무소 등을 각각의 회계단위로 정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의 이해

〈재무제표의 의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내용을 정리한 최종보고서로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구분된다.

① 대차대조표

기업의 회계기간 말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기업이 보유한 재산과 지급해야 할 채무, 납입한 자본금과 잉여금을 기록하고 있다.

② 손익계산서

기업의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집계한 보고서로서 회계기간 동안의 수익과 그에 대한 비용을 비교하여 이익과 손실의 규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③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 주지만 그 내용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는 상관없는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기업의 실제 현금흐름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손익계

산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계기간 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집계하여 순현금의 흐름을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회계기간 동안의 이익과 법인설립 이후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내에 유보된 이익과 사외로 유출된 이익을 나타내주고 있다.

회계감사의 역할

〈회계감사의 의의〉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사자체 내에서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투자자, 채권자)들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뢰를 갖기 위하여 회사가 독립적인 제3자(공인회계사)로 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아 회사의 주주와 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회계감사의 근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중에서 상장법인과 등록법인,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상장을 준비중인 법인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은 회계감사가 의무이고, 그 밖의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외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감사보고서의 내용〉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의견, 재무제표와 주석 그리고 부속명세서 재무분석자료 등이 실려 있어 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인회계사의 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적의견, 부적정의견 그리고 의견거절로 나누어진다. 이중 적정의견 이외의 경우는 회사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세무회계 실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의 10%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10%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은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자 유형 〉

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1년의 외형이 4천8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1년의 외형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③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이 세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품목일 경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 부가가치세의 신고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1~3월, 4~6월, 7~9월, 10~12월) 신고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1~6월, 7~12월) 신고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납부방법 〉

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발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산된 매출액의 10% 가운데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②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매출 금액의 일정을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의 신고 납부

〈 법인세란? 〉

법인사업자는 회계기간 동안에 얻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이 아닌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전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벤처기업같이 특정사업 영위기업의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도 있다.

〈 법인세의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상의 소득으로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부속서류 등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율

1억원 이하 : 16%

1억원 이상 : 28%

〈 법인세법상 유의사항 〉

① 증빙의 관리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할 경우 반드시 세법에서 인정된 증빙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세법에서 인정된 증빙 : 매입세금계산서, 법인명의로 신용카드전표 등)

② 자금거래

회사내의 모든 자금거래는 반드시 장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자금의 유입과 유출원천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그 귀속에 따라 세금부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금의 거래가 추후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막대한 세무상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자금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3-3) 소득세의 신고 납부

< 소득세란? >

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사업소득세와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등이 있다.

< 사업소득세의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와는 달리 인적공제제도가 있어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 소득세율

- 1천만원 이하 : 10%
- 4천만원 이하 : 20%
- 8천만원 이하 : 30%
- 8천만원 이상 : 40%

<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 >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은 지급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고와 납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매월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다음,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하게 된다. 이를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인터넷 벤처 세무전략 : 창업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신청을 하여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의 유형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하며, 벤처기업 해당업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

업과 서비스업 중 일부 등)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20%이상)

② 연구개발 투자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③ 신기술 개발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고도 기술사업 등 신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④ 벤처평가 우수기업

- 창업 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 기업

- 벤처기업의 확인요령

벤처기업 확인 증빙서류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 a.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증명한 서류
- b. 법인등기부등본
- c.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d.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 e. 투자계약서 사본

② 연구개발투자기업

- a. 공인회계사 등이 확인·증명한 서류
- b.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은 등기부등본
- c.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d. 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③ 신기술개발기업

a.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개별 신기술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

b. 변리사가 확인·증명한 서류에 근거하여 공인회계사 등이 확인·증명한 서류

④ 벤처평가우수기업

a. 벤처기업평가서

b. 평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조세특례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특례가 있다.

① 특례대상기업

a.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b.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c.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

② 법인세 또는 소득세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5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③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75%를 감면하고,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의 75%를 감면한다. 또한 대도시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④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시 재산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주식의 양도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a.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 금융기관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b.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c. 신기술 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d.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 (단, 창업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출자 후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⑥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한 비과세

a. 대상법인

-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벤처기업

b. 요건

-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스톡옵션의 수량·매입가격·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 스톡옵션 매입가격이 상장법인일 경우 스톡옵션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평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비상장법인은 세법상의 평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일 것
- 스톡옵션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후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 발행주식 총수의 10%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주식매입가격의 1인당 연간 합계액이 3,000만원(2000년 이전 부여분은 5,000만원) 이하일 것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c. 종업원 등의 범위

임원과 종업원 기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스톡옵션이 부여된 자로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발행 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를 제외한다. 